

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직제 개편에 의한 국의 명칭 변경

주요골자

충청북도 직제 규칙 개편에 따른 “보건사회국장, 농림국장, 식산국장, 보건환경연구소장”을 “보사환경국장, 농어촌개발국장, 농림수산국장, 보건환경연구원장”로 한다.

근거법령

- 충청북도 직제규칙 제6조, 제8조, 제9조
-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

첨 부

1.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 3조 3항중 "보건사회국장, 농림국장, 식산국장, 보건환경연구소장"을 "보사환경국장
농어촌개발국장, 농림수산국장, 보건환경연구원장"으로 한다.